

바로 보는 법규·정책

Regulation

금융회사 이사회의 자금세탁방지 역할과 책임

2025.05.15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바로 보는 법규·정책

금융회사 이사회의 자금세탁방지 역할과 책임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이사회 역할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내실화를 위하여,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이 5월 13일에 시행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주요 개정사항

- ①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 ②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

본 카드뉴스에서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중
이사회가 유의하여 살펴볼만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Source: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요건 적용 등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25.5.13일 시행”, 2025.3

바로 보는 법규·정책

금융회사 이사회의 자금세탁방지 역할과 책임

금융회사 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이사회는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25.5.13일 시행)

이사회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보고요구,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승인
대표이사	업무지침 제·개정 및 폐지 안건의 이사회 상정, 세부 업무지침 승인,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운영,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등
준법감시인	임직원의 직무수행시 업무지침 준수여부 및 보고책임자 업무 감독
보고책임자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과 관련된 업무 총괄,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정기적 점검, 취약점의 대표이사 보고 등

바로 보는 법규·정책

금융회사 이사회와 자금세탁방지 역할과 책임

FAQ(1)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는 업무지침과
대표이사가 승인하는 세부 업무지침의 차이점은?

특금법^(*)령에서 '업무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면 그 명칭을 막론하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 업무지침의 구체적 집행과 관련된 사항, 기준 및 AML 업무의 탄력적 운영
을 위해 위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승인하는
'세부 업무지침'으로 규율할 수 있음



특금법령상 '업무지침' 제·개정 심의·의결을
이사회내 소위원회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특금법령에서 '업무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면
내부통제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함)



법규 개정에 의한 업무지침 개정시에도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업무지침 개정이라도
내용상 실질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바로 보는 법규·정책

금융회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역할과 책임

FAQ(2)



이사회가 감사위원회 등이 실시한 독립적 감사 결과에 대해 승인하면서 재결의할 수 있는지?

감사위원회 등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해 이사회가 검토·승인토록 한 것은 독립적 감사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사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는 취지로, 개별적인 감사 결과에 대해 결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이사회는 감사 결과 발견된 취약점 및 사후조치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 등에게 개선지시 필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외은지점 등 이사회를 두지 않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이사회에 준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에서 동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바로 보는 법규·정책

금융회사 이사회와 자금세탁방지 역할과 책임

FAQ(3)



보고책임자에 대한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의 감독책임은 어떻게 다른지? 준법감시인과 별도로 보고책임자를 두는 경우, 대표이사의 감독책임이 달라지는지?

준법감시인을 보고책임자와 별도로 두는 경우,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가 수행하는 주요 의무에 대한 감독책임을 1차적으로 부담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을 ‘보조’하는 범위에서 보고책임자를 감독 (지배구조법이 정하는 ‘총괄 관리의무’ 수준의 책임을 짐)

-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로서 수행하는 주요 의무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인 감독책임을 부담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책무’는 어떻게 배분하는지?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업무범위 등을 감안하여 작성·배분하면 되며, 동일한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책무를 배분할 수 있음

-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에게 배분할 수 있으며, 책무의 중복·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